

경기도 공고 제2026 - 5985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효력재개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5-6030호(2025.10.1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, 그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4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공고내용 (영업정지 잔여기간)	효력재개 사유
주식회사 고엘기술 (고성곤)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30 비116-비119호 (시흥동,판교아이티센터)	토목공사업 (10-1873)	영업정지 (‘26. 9. 12. ~’26. 10. 8.)	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원고 패소로 효력재개 (판결 선고일 2026.8.12.)

※ 기 영업정지 기간 [2024. 8. 16. ~ 2024. 10. 29. (2개월14일), 2025. 9. 12. ~ 2025. 9. 30(19일)] 제외 잔여기간(27일) 영업정지 재개